



RICON

건설 BRIEF

건 설 브 리 프

산업동향

-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도입 · 변천 과정과 향후 개선방향
 - 분업화 및 전문화 기반 책임시공 체제 정착 필요

정책동향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최근 하도급법 개정안의 내용과 시사점
 - 지급보증 및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 · 보건관리체계 마련 필요

산업동향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도입·변천 과정과 향후 개선방향

- 분업화 및 전문화 기반 책임시공 체제 정착 필요 -

유일한 선임연구위원
(ihyu71@ricon.re.kr)

1. 제도의 현황 및 도입 성격

◆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법’)」이 규정하는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는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과 “입찰브로커”화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

- 1958년 도입된 건설업 면허제도가 1999년 등록제도로 전환되면서 많은 소규모의 페이퍼컴퍼니가 생겨남에 따라 소규모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공사 일부를 직접시공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무자격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제도임
- 그러나 종전의 의무하도급제도 폐지가 거론되면서 그 대체방안의 성격으로 직접시공의무제도가 생겨남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많은 이견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음
- 종전 의무하도급제도는 전문건설사업자의 보호와 육성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였으나 원도급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라는 차원에서 폐지된 반면, 직접시공의무제도는 의무하도급제도와 마찬가지로 규제이면서 직접시공 능력이 없는 원도급자의 위장직영 등으로 많은 하도급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역시 불필요한 규제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 이러한 논란은 최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종전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 적용을 대형공사로까지 확대하고, 주요 공종을 지정하는 것과 더불어 직접시공의무비율도 대폭 확대하면서 현행 건설법 상의 제도적 본질을 왜곡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는 소규모 공사에 대한 종합과 전문의 직접시공이라는 건설공사의 원칙과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건설법 상에 다음과 같이 규정·운영되고 있는 제도

- 건설법 제28조의2 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조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직접시공의 대상은 70억 원 미만의 공사이며, 도급금액 구간별 직접시공비율(직접시공 노무비/총 노무비)은 다음과 같음

- 도급금액 3억 원 미만: 5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3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3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1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2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30억 원 이상 ~ 70억 원 미만: 10% 이상 직접시공
- 이와 같은 직접시공의 이행은 건산법 제28조의2에 따른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직접시공계획에서부터 시작되며,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제출치 않을 경우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자는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의무를 가짐

2. 직접시공의 제도적 의미와 변천 과정

◆ 건산법에 규정되어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도입 이후 최근까지의 주요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제도의 도입 및 시행 당시(2006.1) 건산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적용 대상은 3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였고, 직접시공비율(범위)은 도급받은 공사의 30% 이상이었음
- 이후, 2009년 12월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직접시공의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적용 대상도 30억 원 ~ 300억 원 미만의 공사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전문건설업계 반대 및 상당한 이견 등으로 법안이 폐기되었음
- 그러나 국토부는 2011년 11월 부실건설업체 퇴출 등을 목적으로 건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접시공의무 제도를 종전 30억 원 ~ 50억 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하고 직접시공비율을 일부 조정함
 - 도급금액 3억 원 미만: 5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3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3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1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2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3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10% 이상 직접시공
- 이후, 지속적으로 직접시공의무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짐에 따라 다시 이를 확대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됨
 - 정동영 의원: 100억 원 이상 공사의 30% 이상을 직접시공토록 의무를 확대하는 건산법 개정안 발의(2016.7.6)
 - 이학영 의원: 모든 공사에서 20% 이상을 직접시공토록 하고, 그 중 30% 이상을 노무비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직접시공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 발의(2016.7.8)
 - 윤관석 의원: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 건산법 개정안 발의(2017.1.6)
- 이러한 상황에서 윤관석 의원의 발의안대로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단,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는 감리자에게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음)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토록 하는 규정이 건산법 제28조의2 제4항에 신설됨(2017.3.21)

- 상기 직접시공의무제도는 정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로(2018.6.28), 다소 큰 변화를 겪게 됨. 우선, 2019년 3월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 및 비율을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 조치함(현행 규정과 동일)
- 또한, 자재구입비와 일반관리비 등 시공과 무관한 경비성 지출로 의무비율을 충족해오던 관행 및 편법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직접시공의 비율 산정방식을 총 공사비 기준에서 노무비 기준(직접시공 노무비/총 노무비)으로 변경하여 시행함
- 이후, 2020년 6월 입법예고를 통해 종합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함. 따라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접시공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토록 조치함(시행규칙(안) 제13조의4)
- 또한, 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의 자발적인 직접시공 참여 유도과 시공능력평가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토록 함(시행규칙(안)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 이후,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2020.7.9)에 따라 전문·종합건설업 간의 상대시장 진출시 직접시공이 전제됨에 따라 불필요한 직접시공계획의 통보 의무를 제외하며(법 개정, 2020.12), 직접시공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직접시공 실적 가산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토록 조치함(시행규칙 개정, 2020.12)

◆ 지금까지 국토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일부의 제도개선과 변화를 추진해 왔던 것과는 다르게 2022년 4월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자체 공사에서의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확대가 추진됨

- 서울시는 2022년 4월 지자체 차원의 서울시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 및 같은 해 6월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확대를 추진함
 - 직접시공 대상 주요 공종 지정(입찰공고문)
 -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시 직접시공계획의 비율(%)을 평가
 - 건산법 상의 의무대상 기준을 70억 원 → 1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직접시공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의 추진
- 이후, 서울시는 2023년 11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발표(직접시공 확대 강화) 및 SH공사를 통한 직접시공제 적용 공사 발주(시행)
 - 서울시 모든 공공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품질 및 안전에 직결된 공종은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원도급자 100% 직접시공을 추진
 - 이에 따라 SH공사는 법률적 근거 없이 서울시 정책에 의해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 발주 일부 시행
- 또한, 행안부는 서울시 요청 등에 따라 예규를 개정하여 2025년 1월부터 30억 원 이상 지방계약공사(적격심사, 종합평가) 입찰시 원도급자 직접시공비율을 평가하는 제도 시행(예고)

-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을 하는 금액의 비율(직접시공 공종 직접노무비/총 직접노무비)을 평가: 30% 이상시 만점(배점 5~6점)
- LH공사의 경우에도 국감 지적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대상지구(성남북정1지구 3개 ब्ल)를 지정해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설공사에 대해 원도급자 직접시공 시범사업을 추진
- 그러나 서울시, 행안부 등의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 정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발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공공공사 주요 공종 직접시공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2024.12.3.)
 -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모두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
 - 이후, 서울시 관계자들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를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전문건설업계 의견을 청취(2024.12.20)
- 행안부는 업계 반발이 확대되자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계약공사 입찰시(적격심사, 종합평가) 직접시공비율 평가의 만점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축소하는 등 다음과 같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2025년 중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협의하기로 함
 - 입찰공고: 공종별 직접노무비를 명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시공의 만점비율 20%로 명시
 - 낙찰자 결정: 입찰자가 제출한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
 - 계약이행: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노무비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은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한 하도급 계약서 및 KISCON(건설산업자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적을 확인
- 이후, 서울시는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직접시공을 서울시의 규제철폐 대상에 포함시켜 발표함
 - 서울시는 시장 및 부서장들이 모두 참석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2025.1.14)」를 개최하여 일상 속 규제 및 업종별 규제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 청취 및 토론
 - 토론회 이후 서울시의 전부서·직원 검토와 전문가심의회를 거쳐 과감한 규제철폐 발표(2025.2.10)
 - 규제철폐 발표의 13호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로서 업계의 이행능력이 담보되지 못하고 부담 가중으로 작용한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고, 행안부와 동일하게 30억 원 이상의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입찰시 직접시공비율을 평가(20% 이상시 만점)
 - 서울시는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2025.5.8)」를 개최하여 서울시 각 부서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2,538건의 규제 중 이날까지 규제철폐로 발표된 129건에 대한 성과보고 및 앞으로의 지속적인 규제철폐 추진과제 등을 논의함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화 규제 등 지속적인 규제철폐 검토〉



*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2025.5.8)

3. 향후 개선방향

◆ 건설공사 품질 확보와 안전 강화, 그리고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성실한 전문건설사의 책임시공 체제 강화임

- 전문건설업계의 건의 등으로 당초보다 축소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행안부의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은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22년부터 이어져 온 서울시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과 건설업계 반발을 통해 원도급자 직접시공은 기존 건섵법 규정과 같이 소규모 공사로 한정해 매우 제한적으로 부여돼야 하는 규제임을 확인하였고,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안전 강화, 그리고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서는 전문건설 중심의 책임시공 체제를 강화하는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부실시공 방지와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직접시공의 기반과 경험이 부족한 종합건설사에게 무리하게 직접시공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공종별 전문기술력과 현장의 경험을 갖춘 전문건설사가 1차 시공자로서 책임시공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됨
 - 원·하도급 간의 파트너링(partnering) 개념을 강화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적극적 활용 필요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된 전문건설 간 컨소시엄 입찰방식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원도급자에게 일부 직접시공을 요구하더라도 입찰자의 책임시공 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입찰자 스스로의 역량에 적합하게 직접시공과 하도급 공종을 제안토록 조치해야 함
 - 하도급으로 시행하는 공종들은 하도급적정성 심사를 최소 90% 이상 수준으로 강화해서 공사비의 누수 없이 적정 하도급공사비가 확보되도록 조치
- 건설공사에서의 하도급은 분업화와 전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생산의 가장 핵심적 기능이며, 하도급의 발전 없이는 품질과 안전에 대한 혁신도 없으므로 건설하도급의 중장기적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발굴 필요
 - 많은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건설하도급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일본의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사례와 같이 「(가칭)건설하도급진흥법」 마련을 검토

정책동향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최근 하도급법 개정안의 내용과 시사점 - 지급보증 및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 강화 -

박승국 선임연구위원(skpark@ricon.re.kr)

1. 하도급대금 지급안정 강화의 필요성

- ◆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대우조선해양건설, 태영건설, 벽산건설, 신동아건설 등 대형 건설사 마저 부도 위기에 몰리거나 기업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건설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음**
 - 최근 건설사들의 위기는 시공능력 평가순위 30위권 내의 대형 건설사까지 확대되고 있음
 - 지방 부동산 사업 의존도가 높은 상위 30위권 내 건설사들의 잠재 부실 위기가 높아져 건설업계 전방위로 부실 사태가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음
- ◆ **중견 및 대형 건설사들의 부실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전문건설사에 영향을 주어 도미노 형태의 연쇄적인 동반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짐**
 - 성실히 시공을 완료한 전문건설업체들이 원사업자의 부실 및 지급불능으로 인해 연쇄적인 경영상태 악화를 방지하려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강화 및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2. 하도급법 개정안(이현승 의원, 2025. 5. 15.)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보증을 의무화(제13조의2제1항)**
 -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에 상응한 조치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위변제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3자간 합의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하는 경우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수급사업자의 경우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도급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을 요구받는 등 여전히 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에는 3자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제도를 악용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되어야 할 지급보증이 교부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불공정거래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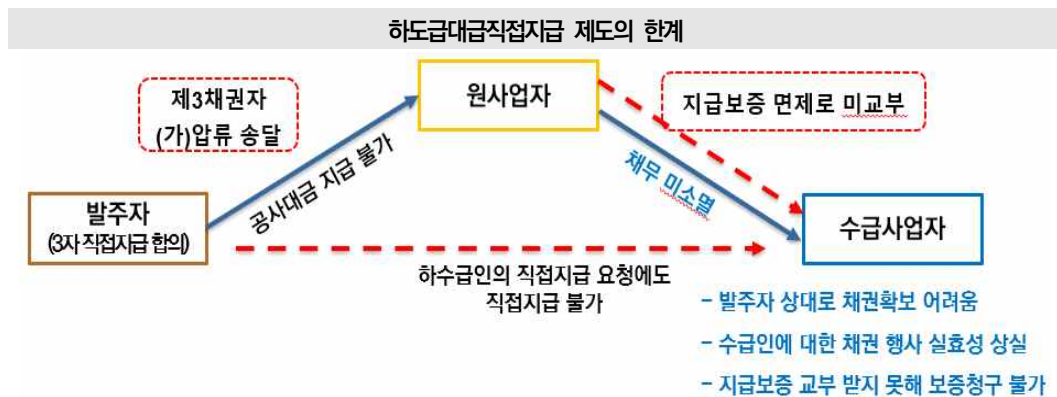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하도급대금의 지급방식과 관련된 제도로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어음 지급, 대물 변제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제도는 아님
- 따라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요건에서 삭제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급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음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개정(제14조제1항)

- 하도급대금을 1회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할 경우나 하도급대금 금액이 상당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위탁업무에 지장 및 경영 상태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원사업자가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급불능 상태로서 이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요청은 실효성이 상실됨
- 따라서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도록 개정(제14조의2 신설)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요건 중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의 3자 합의를 요건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원사업자의 예상치 못한 부도 또는 지급불능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 안정성을 높이하고자 한 것임
- 그러나 3자 합의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도 하도급대금의 지급 안정성은 담보되지 못함, 3자 합의 이후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채권은 담보되지 못하여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못함



- 이 경우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의 (가)압류 시점과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 시점간에 경합을 다투어 채권의 우선순위가 확정됨
-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채권을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시 하도급 공사대금의 보호가 가능함

정책동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 필요 -

홍성호 선임연구위원(hsh2023@ricon.re.kr)

1. 판결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37건의 법원 판결('25.3.17 기준) 중 유죄 선고는 33건(89.2%), 무죄 선고는 4건(10.8%)으로서 유죄 선고가 다수를 차지함

- 유죄 선고된 33건의 경영책임자 등 처벌수준은 ①실형 5건(15.2%), ②징역형의 집행유예 26건(78.8%), ③벌금형 2건(6.1%)이며, 법인 처벌수준은 개별 사건에 따라 벌금 500만원~20억 원임
- 5건의 실형 선고 이유는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며, 형량은 징역 1년~2년임.
- 4건의 무죄 선고 사유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적용 미 대상(건설업 2건),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과 사고 발생간 인과관계 부재(1건), ▲과실 정도 대비 사고 책임 과도(1건)임

◆ 37건의 법원 판결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17건(46.0%), 제조업 15건(40.5%), 기타업 5건(13.5%)의 순서로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판결이 다수를 차지함

- 건설업 판결은 유죄 15건(88.2%), 무죄 2건¹⁾(11.8%)이며,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수준은 ①실형 1건(6.7%), ②징역형의 집행유예 14건(93.3%)이고 법인 처벌수준은 벌금 1천만원~2억 원임

◆ 기업규모별 법원 판결은 중소기업 29건(78.4%), 중견기업 5건(13.5%), 대기업 3건(8.1%)의 순서로 나타남

- 중소기업 판결은 유죄 28건(96.6%), 무죄 1건(3.4%)이며,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수준은 ①실형 4건(14.3%), ②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82.1%), ③벌금형 2건(3.6%)임
- 28건의 중소기업 유죄 판결 중 건설업이 15건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 건설사 유죄 선고 비율이 높음

1) 1건은 사망사고 발생 작업인 조선소의 승강기 설치공사가 건설공사로 인정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업종이 당초 제조업이나 건설업으로 분류된 것임. 당해 사고를 건설업 판결 사례에서 제외하면 건설업의 유죄 비율은 93.8%로서 전체 유죄 비율보다 높은 수준임

〈기업규모·업종별 법원 판결 현황('25.3.17 기준)〉 단위: 건, (%)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소계
	건설업	제조·기타업	건설업	제조·기타업	건설업	제조·기타업	
무죄	1(25.0)	0(0.0)	0(0.0)	1(25.0)	1(25.0)*	1(25.0)	4(100.0)
유죄	소계	15(45.5)	13(39.4)	0(0.0)	4(12.1)	0(0.0)	33(100.0)
	실형	1(20.0)	3(60.0)	0(0.0)	1(20.0)	0(0.0)	5(100.0)
	징역형의 집행유예	14(53.9)	9(34.6)	0(0.0)	2(7.7)	0(0.0)	26(100.0)
	벌금형	0(0.0)	1(50.0)	0(0.0)	1(50.0)	0(0.0)	2(100.0)
합계	16(43.3)	13(35.1)	0(0.0)	5(13.5)	1(2.7)	2(5.4)	37(100.0)

* 사망사고 발생 작업인 조선소의 승강기 설치공사가 건설공사로 인정됨에 따라 해당 기업을 건설업의 대기업으로 분류함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조항별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위험성 평가 및 조치, 26건, 27.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기준 마련(안전책임자 등 업무지원, 23건, 24.0%)이 가장 많음

-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이라 보기 힘들고 그 기준도 모호한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의 위반사항도 유죄판단의 근거로 많이 인용됨
- 건설업은 ▲도급 시 산재예방능력 평가기준 마련(도급 등 안전조치)도 주요 위반사항으로 인용되고 있음
- 경영책임자등 4대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행정기관이 명한 시정조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가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조항(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 단위: 건, (%)

구분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 총괄조직	③ 위험성평가/조치	④ 안전보건 예산편성	⑤ 안전책임자등 업무지원	⑥ 안전전문 인력배치	⑦ 종사자 의견청취	⑧ 비상상황 대응	⑨ 도급 등 안전조치	소계
건설업	7(13.2)	2(3.8)	12(22.6)	3(5.7)	11(20.8)	1(1.9)	6(11.3)	5(9.4)	6(11.3)	53(100.0)
제조업	1(10.0)	0(0.0)	4(40.0)	0(0.0)	2(20.0)	0(0.0)	3(30.0)	0(0.0)	0(0.0)	10(100.0)
기타업	1(3.0)	2(6.1)	10(30.3)	3(9.1)	10(30.3)	1(3.0)	1(3.0)	2(6.1)	3(9.1)	33(100.0)
합계	9(9.4)	4(4.2)	26(27.1)	6(6.3)	23(24.0)	2(2.1)	10(10.4)	7(7.3)	9(9.4)	96(100.0)

주: 유죄 근거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위반이 주로 인용되나, 25년 1월 판결에서 최초로 재발방지대책 미이행/반기 이행점점 미이행도 지적됨

2. 시사점

◆ 중소 건설사 경영책임자 등 유죄 비율이 다른 기업유형보다 높은 상황임. 이는 ①인력과 예산의 부족과 함께 ②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건설업 특성에 기인함

- 건설사는 다수 현장에서 입·출입이 빈번한 일용근로자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복잡한 도급구조로 인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힘들기 때문임. 이는 경영활동 위축과 형식적인 안전관리를 초래함

◆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모호성으로 인해 법 적용·해석에 논란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음

- 범죄 성립요건인 ①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 ②의무 위반과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 ③의무 위반에 따른 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증명되어야 하나, 검찰 공소 내용이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RICON
건설 BRIEF VOL 85